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3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- 나.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(안 제1조, 안 제5조제1항제3호, 안 제5조의2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수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- 2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 - 2) 입법예고: 2020. 10. 16. ~ 2020. 11. 5.(20일 이상)
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 - 4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
- 안 제9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「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결정」 규정을 추가하였으며
- 안 제1조, 제5조, 제5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의 조문을 반영하였으며
- 안 제10조제3항, 제15조제2항은 상위법 지방기금법 제8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
- 그 밖에 조문들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.

다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, 그 밖의 조문들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련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[전문개정 2011.5.30.]